

의안번호	제 56 호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9월 7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
----------	----

발의연월일 : 2022년 9월 7일
발 의 자 : 이상정,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조성태,
이의영

1. 제안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령 내용과의 중복 및 불필요한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장 구분을 신설하여 도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원장·부위원장 지명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 (안 제7조)
 - 위원수: (현행) 15명 이내 → (개정안) 20명 이내
 - 위원장·부위원장: (현행)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 → (개정안)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
 - 위원에 도 거주 주민대표, 도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추가(각 2명 이상)
- 위원회 연임 사항 변경함. (안 제8조)
 - (현행) 두 차례 → (개정안) 한 차례
- 불필요한 조례 준용 조항을 삭제함. (안 제16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2 - 호
- 다. 협 의 : 보건정책과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 을 신설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의료서비스” 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로, “도민” 을 “충청북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을 신설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앞에 “제3장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를 신설한다.

제5조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
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도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도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임기)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신설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구성되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장 총칙</u>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충청북도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보건의료서비스”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u></p> <p><u>2. “공공보건의료”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u></p> <p><u>3. “공공보건의료사업”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u></p>	<u><삭 제></u>

<p>른 사업을 말한다.</p> <p>4. “<u>공공보건의료기관</u>”이란 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p> <p>5. “<u>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u>”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 <u>공공보건의료서비스</u>----- ----- <u>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u>----- ----.</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u></p>
<p>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② (생략)</p> <p><u><신 설></u></p>	<p>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공공보건의료위원회</u></p>
<p>제5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u>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u></p>	<p>-----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u></p>

<p>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요 사항----- ----- ----- -----.</p>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된다.</p> <p>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p> <p>1. <u>당연직</u> : 충청북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u>충북권역응급의료센터장</u>, <u>충북권역외상센터장</u>, <u>충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u>, <u>충청북도소방본부장</u>, <u>권역책임의료기관장</u>, <u>지역책임의료기관장</u>, <u>충북지역암센터장</u>, <u>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u>, <u>청주시서원보</u></p>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1.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u></p>

<p><u>건소장</u></p> <p><u>2. 위촉직 :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그 밖에 공공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대표</u></p> <p><u>3. 도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u></p> <p><u>4. 도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u></p> <p><u>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u>제8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u></p> <p><u>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제8조(위원회 임기)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u>제12조(적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u></p>	<p><u><삭 제></u></p>
<p><u><신 설></u></p>	<p><u>제4장 공공보건의료 지원단</u></p>
<p><u>제14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u></p>	<p><u>제14조(지원단의 기능) -----</u></p>

<p>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u>공공의료에 관한 법률</u>」 시행 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u>업무</u></p> <p>2. ~ 10. (생략)</p>	<p>-----.</p> <p>1.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u> <u>시행규칙</u>」 제17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u>업무</u></p> <p>2. ~ 10. (현행과 같음)</p>
<p>제16조(지원단의 위탁 운영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u>충청 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u>」에 따른다.</p> <p>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u>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제16조(지원단의 위탁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삭제></p>

관계법령 발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다.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다.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
- 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5조의2(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③ 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가보훈처차장
-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5(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공공보건의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

3. 관련조문

- 제7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수당)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운영 회의수당 추계

사업명	내역	
	지원내용	예산
위원회의 설치·운영	회의수당 100,000원×3회×18명*	5,400천원

*20명중 공공보건의료 담당공무원 2명 제외

나. 추계 결과 :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27,0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출	5,400	5,400	5,400	5,400	5,400	27,000
위원회의 설치·운영	5,400	5,400	5,400	5,400	5,400	27,000

※ 정책기획관 위원회 Pool 수당에서 지급